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청년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 조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406호)

2026. 9.

재 정 경 제 기 획 위 원 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1
IV . 참고사항	2
V . 검토의견	3
1. 청년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안 제16조제7호, 제27조의2, 제34조제9호의3, 제57조의3, 제68조의4, 제71조제6호의3 및 제73조의4 등)	3
VI . 입법의 재정영향	1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은희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8. 4.

다. 회 부 일 : 2026. 8. 5.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참여 확대, 성별에 따른 효과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학자금 및 주거 문제 등으로 사회진출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 등 청년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제고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가. 정부는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안 제16조제7호 신

설).

나. 정부는 예산안 및 기금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
인지 예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7
조의2 및 제68조의4 신설).

다.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청년의 권익 증진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청년인지 결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결산서
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에
청년인지 예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추가함(안 제34조
제9호의3 및 제71조제6호의3 신설).

IV.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0405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0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
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V. 검토의견

1. 청년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안 제16조제7호, 제27조의2, 제34조제9호의3, 제57조의3, 제68조의4, 제71조제6호의3 및 제73조의4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청년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 예산의 원칙에 청년 관련 사항 규정 - 청년인지 예산서 작성·제출 -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제출 - 청년인지 결산서 작성(제출은 「국가회계법」에 신설) - 청년인지 기금결산서 작성(제출은 「국가회계법」에 신설)

지난 2006년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결산제도”¹⁾가 도입되어 2010년도 예산안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²⁾가 도입되어 2023년도 예산안부터 적용되고 있음. 이러한 인지도 예·결산제도는 예산 및 기금이 성평등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집행 결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관련 정책목표가 재정운용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이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³⁾에게 미치는

- 1)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국가재정법」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예산의 원칙에 명시하는 한편, 예산 및 기금이 청년의 권익 증진 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청년인지 예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예산 및 기금이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청년인지 결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결산서(이하 “청년인지 예·결산서”라 함)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임.⁴⁾

청년인지 예·결산제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청년은 교육에서 취업으로의 이행, 주거 독립, 자산 형성 및 가족 형성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에 있으나 노동·주거·경제·건강 등 여러 분야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국가재정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국무조정실이 「청년기본법」에 따라⁵⁾ 전국 만 19~34세 청년 1만 5,0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청년 개인의 평균부채 1,637만원 중 주택 관련 부채가 1,166만원

4) 청년인지 결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결산서의 국회 제출에 관한 사항은 함께 발의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되어 있음.

5) 「청년기본법」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년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주거정책은 주택구입자금 대출(31.3%), 전세자금 대출(25.0%), 월세 등 주거비 지원(20.7%) 순으로 나타났음. 또한,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였으나 상담을 받지 못한 청년이 6.3%였고, 그 사유로는 비용 부담을 제시한 비율이 38.6%로 가장 높았음.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중 일부 요약]

□ (부채) 청년 개인 평균부채는 1,637만원이며, 이 중 주택 관련 부채가 1,166만원으로 가장 많음

구분	총 부채 (만원)	주택 관련 부채	자산투자 위한 부채	학자금 부채	생활비 부채
'22년	1,172	823	36	58	32
'24년	1,637	1,166	73	68	35

○ (주거 정책) 현재 필요한 주거정책(1순위)은 주택구입자금대출이 31.3%로 가장 많고, 전세자금대출(25.0%), 월세 등 주거비지원(20.7%), 공공임대(14.9%) 順

구분	합계(%)	주택 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주거비지원	공공임대공급	민간임대 관리감독	기타
'22년	100.0	41.0	23.9	17.3	11.8	4.2	1.9
'24년	100.0	31.3	25.0	20.7	14.9	5.8	2.4

○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은 6.3%, 그 이유는 비용부담이 38.6%로 가장 많음

구분	합계(%)	비용부담	심리적 거부감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시간부족	혼자 가기 어려워서	주변에 상담 받을 곳없음	주위 시선· 반대 때문	기타
'22년	100.0	27.5	18.9	15.6	20.0	4.1	3.4	3.8	6.7
'24년	100.0	38.6	17.7	15.3	11.7	6.7	5.5	4.3	0.2

※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2025

이러한 조사 결과는 청년이 노동·주거·경제·건강 등 여러 영역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으나, 현행 예·결산제도만으로는 개별 재정사업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청년의 수

해 규모 및 정책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청년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거나 일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수혜대상, 기대효과 및 성과목표 등을 분석하고 결산 단계에서 집행실적과 정책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청년의 정책수요를 재정 운용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재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이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인지 예·결산제도는 부처별 청년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재정사업 간 연계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정부가 「청년기본법」에 따라⁶⁾ 수립한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35개 중앙행정기관이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총 33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편성된 청년정책 예산은 총 28조 2,279억원임.

6)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025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현황]

(단위: 개, 억원, %)

분야	과제수	청년예산		
		'24년	'25년	비중
I. 일자리	113	58,854	65,261	23.1
II. 주 거	27	115,911	110,699	39.2
III. 교 육	112	75,378	82,253	29.1
IV. 생활·복지·문화	41	19,083	22,431	7.9
V. 참여·권리	46	1,233	1,635	0.6
합 계	339	270,459	282,279	100.0

※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5.4.

이처럼 청년정책은 다수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개별 사업의 성과뿐만 아니라 사업 간 중복 여부, 정책 사각지대 및 유사 사업 간 연계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청년인지 예·결산서를 통해 각 사업의 청년 관련 목표와 성과지표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시할 경우 부처별로 분산된 청년사업을 비교·점검하고, 청년의 정책수요가 높은 분야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청년인지 예·결산제도의 분석대상과 정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 청년의 권익과 삶의 질은 일자리·소득·주거·교육·건강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경기상황·노동시장·주택가격 등 재정사업 외의 요인에도 영향을 받으며

로 개별 사업의 효과를 구분하여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또한, 청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사업 외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청년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까지 분석대상에 포함하면 대상사업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는 반면, 청년 대상사업으로 한정하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선행연구와 시범작성을 통해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성과지표 및 효과분석 방법 등 구체적인 분석체계를 선행적으로 마련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 청년정책 수립·평가체계와 일부 기능이 중복되어 개별 부처의 행정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청년기본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청년정책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고 있으며, 국무총리는 이를 종합하여 분석·평가하고 있음.

청년인지 예·결산제도가 부처별 청년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재정사업 간 연계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거나, 별도의 청년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기금결산서를 작성할 경우 사업현황, 성과목표 및 집행실적 등을 중복하여 작성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기존의 성인지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까지 함께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자료 작성과 성과관리 업무가

누적되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도 있어 보임.

셋째, 제22대 국회에는 개정안 외에도 다양한 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어, 이를 개별적으로 도입할 경우 과도한 행정부담과 제도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하나의 재정사업이 여러 제도의 분석대상에 중복하여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제22대국회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 현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도입 제도
2200084	임미애의원	2024. 6. 3.	지역균형발전인지
2201368	윤준병의원	2024. 7. 4.	인구변화인지
2204356	윤호중의원	2024. 9. 26.	인구증감인지
2205065	최보운의원	2024. 10. 30.	장애인지
2205417	김영진의원	2024. 11. 11.	소득재분배인지
2206122	박용갑의원	2024. 12. 2.	인구인지
2208176	이종배의원	2025. 2. 14.	저출생·고령화인지
2210227	문진석·황운하의원	2025. 4. 29.	소득·자산재분배인지
2220406	조은희의원	2026. 8. 4.	청년인지

이에 따라 행정부담이 누적되고 제도가 형식화될 우려가 있으며, 특정 정책목표에만 별도의 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유사 법률안의 중복성과 우선순위, 기존 제도의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 여부와 통합 운영 가능성을 논의할 필요

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재정정보원은 신규 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을 논의할 때에는 유사 목적 제도와의 중복 여부, 행정적 비용을 고려한 실효성 및 별도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음.⁷⁾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청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행 인지예산은 성별격차 개선, 기후위기 대응 등 범정부적 정책목표를 예산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한 청년정책과는 성격이 상이하고, 대상집단별 인지예산 도입 시 아동·노인·장애인 등 유사 요구로 확대되어 재정체계의 복잡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예산서·결산·기금운용계획서·기금결산서 4종 신설에 따른 행정부담 대비 실효성이 제한적인 만큼, 별도 제도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예산 편성 및 성과관리 체계 내에서 청년지원 효과를 점검하고 효과성 높은 사업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7) 한국재정정보원, 「인지 예·결산제도 운영현황 국제비교」(2024.11.)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 정관리계획 3. ~ 5. (생략) ④ ~ ⑪ (생략)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제73조의5----- ----- 3. ~ 5. (현행과 같음)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6. (생략) <u><신 설></u>	제16조(예산의 원칙) ----- ----- -----. 1. ~ 6. (현행과 같음) 7. 정부는 예산이 「청년기본법」 제 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하 “청년” 이라 한다)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 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 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27조의2(청년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청년의 권익 증진 등 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이하 “청년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청년인지 예산서에는 청년 권익 증진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 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청년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현행	개정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 1. ~ 9의2. (생략) <u><신설></u> 10. ~ 16. (생략) <u><신설></u>	<u>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u>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 ----- ----- -----. 1. ~ 9의2. (현행과 같음) <u>9의3. 청년인지 예산서</u> 10. ~ 16. (현행과 같음) <u>제57조의3(청년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u> <u>정부는 예산이 청년의 권익을 증진 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 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 고서(이하 “청년인지 결산서”라 한 다)를 작성하여야 한다.</u> <u>② 청년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청년의 권익 증진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u>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u>제68조의3, 제68조의4</u> ----- ----- -. ----- ----- ----- ----- ----- -----. <u>제68조의4(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u>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운용 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u>제68조의3</u> ,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만, 기금신설로 인하여 연도 중 기 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6 조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의 규정 중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아니한다. <u><신설></u>	

현행	개정안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 6의2. (생략) <u><신설></u> 7. (생략) <u><신설></u>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청년의 권익 증진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청년 권익 증진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 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 ----- ----- ----- ----- ----- ----- ----- ----- 1. ~ 6의2. (현행과 같음) <u>6의3.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u> 7. (현행과 같음) <u>제73조의4(청년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u> ① 정부는 기금이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

현 행	개 정 안
	<u>하는 보고서(이하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u> <u>② 청년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청년의 권익 증진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u>
제73조의4(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생 략)	제73조의5(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현행 제73조의4와 같음)

VI. 입법의 재정영향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청년인지 예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추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7,000만원, 2031년 7,6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3억 6,400만원(연평균 7,300만원) 이상으로 추계하였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청년인지 예산서 예산안 첨부서류 추가 (안 제34조제9호의3 신설)	45	46	47	48	49	235	47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 기금 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추가 (안 제71조제6호의3 신설)	25	25	26	26	27	129	26
합 계	70	71	73	74	76	364	73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2026. 8. 27.

문 의 처

02)6788-5153